강릉시의회 공고 제2022-17호

「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8월 22일

강 릉 시 의 회 의 장

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제정이유

○ 강릉시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환경교육과 지역참여로 주민복지 증진을 통하여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제정의 목적, 정의, 책무를 규정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(안 제5조)
- 다.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규정(안 제6조)
- 라. 위원회 설치, 위원장 직무, 회의 등을 규정(안 제7조~제10조)
- 마. 생태관광센터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1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.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.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- 주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
- 전화: 033-640-4118

- 팩스: 033-640-4070

붙임 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강릉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강릉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생태관광"이란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8호에 따른 관광을 말한다.
 - 2. "생태관광지역협의체"란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강릉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생태관광 육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생태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

시책을 종합적·계획적·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강릉시 생태관광육성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
- 2.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
- 3.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- 4. 생태관광 자원·자산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 방안
- 5.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
- 6.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, 교육 및 민간단체와의 교류 지원 방안
- 7.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
- 8. 생태관광 실적평가에 대한 사항
- 9.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사항
-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강릉시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, 평가에 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.
- 제6조(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)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을

-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- 1. 생태관광 실태조사 지원 사업
- 2.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
- 3.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
- 4.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
- 5.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, 교류, 교육 사업
- 6.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 문하기 위하여 강릉시 생태관광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 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-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1. 관계 공무원
 - 2. 시민단체, 환경단체,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- 3.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
- 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1. 생태관광 육성 기본계획
- 2.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
- 3. 생태관광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
- 4.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0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일시,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, 상정안건과 심의에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배포한다. 다만,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생태관광업무부서의 담당으로 한다.
 -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,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

- 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11조(생태관광센터) 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강릉시 생태관광센터(이하 "생태관광센터" 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생태관광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생태관광 실태조사
 - 2.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
 - 3.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
 - 4. 생태관광 관련 교육사업
 - 5. 생태관광 관련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
 - 6. 생태관광 관련 민간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
 - 7. 그 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③ 생태관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 - ④ 시장은 생태관광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」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- 제12조(포상)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「강릉시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 령

□ 자연환경보전법
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5. "생태계"란 식물·동물 및 미생물 군집(群集)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.
 - 15. "자연자산"이라 함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·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.
 - 18. "생태관광"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 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.
- 제41조(생태관광의 육성)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·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지 정할 수 있다.
 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(이하 "생태관광지역" 이라 한다)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 태관광지역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.
 - ③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, 생태관광자원의 조사·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·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법규명:				
○ 성명(단체명) :				
○ 주		소 :		
○ 연	락	처 :		

제·개정안 내용	의 견	비고